

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

보다 나은 농어촌

## 보 도 자 료

Press Release



한국농어촌공사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임태호 차장(061-540-5422) / 제공일: '22.9.6.(총 3매, 관련사진 첨부)

## 담보가 설정된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이 쉬워진다

관련법 개정을 통해 농지가격의 30%까지 담보를 설정해도 농지연금 가입이  
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

-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(지사장 이연춘)는 금년도 8월 24일부터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 조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.
- 2011년에 도입된 농지연금사업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, 대부분의 농업인은 농기계 구입이나 자녀 학자금 대출 등의 목적으로 농지 담보대출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되었다.
- 지금까지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담보 설정 비율이 농지가격의 15%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했으나, 현장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가입제한 완화 요구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.

-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업인들은 자신이 보유한 농지가격의 30%까지 담보를 설정해도 농지연금에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.
- 다만,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인출형 상품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데, 수시인출형 상품은 총 수령가능액의 30% 이내에서 필요 금액을 수시로 인출 가능하며 나머지 70%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 상품이다.
- 한편, 농지연금사업은 올해 2월에도 가입연령 기준을 기존 만65세에서 만60세로 완화하는 등 농업인 가입 확대와 농정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.
- 이연춘 진도지사는 “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 기준을 완화해 농지연금사업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준다는 본래 취지와 역할을 더 충실하게 다 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말하면서 “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에서는 보다 더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사업의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참여 유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## [붙임] 관련사진

**보다나온 농어촌**

**농지연금**

지가 있다면  
금이 있습니다  
금 바로 가입해야 할  
꼭같은 노후 설계 찬스~

**지원대상**

-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/영농경력 5년 이상(전체 영농기간 합산)

**대상농지**

- 공부상 지목이 전답·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
-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

**연금수령액**

-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(월 300만원 한도)
- 농지가격: 개별공시지가 100% 또는 감정평가액 90%

**가입혜택**

-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
-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
-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

상담문의 | 1577-7770 [www.fb.or.kr](http://www.fb.or.kr)

농림축산식품부 **kf** 한국농어촌공사 **fb** 농지은행·농지연금

## 【농지연금사업 홍보 광고문안】



## 【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청사 전경】